

맹견소유자는 꼭! 들어주세요!

- 맹견의 소유자이신가요?
그렇다면,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!

-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!
-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,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
(기존 소유자는 '19.9.30까지 교육 이수)

※ 교육이수 방법 :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
· 위반 시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
- 맹견과 함께할 때 꼭! 지켜야 할 안전조치



-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!
 -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·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.
 - 위반 시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- 맹견은 어린이집,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!
 -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 돼요!
 - 위반 시 과태료 : 1차 위반 100만원 / 2차 200만원 / 3차 300만원

